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

전문공보관 김정진
전화 031-470-4420

보도자료
2023. 9. 5.(화)

제 목

**축협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現조합장(당선)과
前조합장(낙선)을 검찰 직접수사로 구속기소**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
-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(부장검사 이진용)는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한 甲축협 조합장선거 관련 금품제공 사건을 보완수사한 결과,
 - 선거권자인 조합원 3명에게 합계 150만원을 살포하고 조합원 142명을 호별방문한 조합장 당선자(現조합장) A를 오늘(9. 5.) 구속기소하고,
 - 조합장 재임 중 조합원 369명에게 선물세트 합계 594만원 상당을 제공한 조합장 낙선자(前조합장) B를 구속기소하고,
 - 조합원 25명에게 합계 200만원 상당의 화환을 제공한 조합장 출마 예정자(조합원) C를 불구속기소하였음
- 검찰은 금품을 살포한 전·현직 조합장의 불구속 송치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여 추가 금품제공 혐의까지 밝혀내 구속기소하고,
 - 출마예정자와 금품살포에 가담한 조합원도 불구속기소하여 지역 사회에 만연한 금품선거 범죄에 경종을 울림
- 검찰은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조합원들의 표심을 왜곡하는 금품살포 등 선거부정에 엄정 대처하고,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임

I

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1. 피고인

- A (59세, 甲축협 現조합장,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선자, 구속기소)
- B (68세, 甲축협 前조합장,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낙선자, 구속기소)
- C (67세, 甲축협 조합원,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불출마, 불구속기소)

2. 공소사실 요지 [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]

- A는 조합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'23. 2.~3. ① 조합원 3명에게 각 50만원 제공, ② 조합원 1명에게 50만원 제공 의사표시, ③ 조합원 1명에게 액수 미상 금품제공 의사표시, ④ 조합원 142명 호별방문
- B는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현직 조합장으로서 '21. 2.~9. 조합원 369명에게 합계 594만원 상당 선물세트 제공
- C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'22. 9.~'23. 1. 조합원 25명에게 합계 200만원 상당의 화환 제공

II

주요 수사경과

- 수사단서 : A 선관위 수사의뢰, B 일반인 고발, C 선관위 고발
- 경찰 불구속 송치 : A '23. 7. 6., B '22. 10. 17., C '23. 4. 7.
- 검찰 수사
 - A 관련, 관련자 농막 등 압수수색, 조합원 150여명 조사를 통해 조합원 2명에 대한 금품제공 및 호별방문 등 추가 입건
 - B 관련, 주거지 등 압수수색, 조합원 100여명 조사를 통해 조합원 142명에 대한 274만원 상당 기부행위 추가 입건
 - C 관련, 관련자들 조사 및 자료 분석
- 기소 : A '23. 9. 5. 구속기소, B 9. 1. 구속기소, C 8. 30. 불구속기소

Ⅲ

수사결과

1. A 관련, 신속한 검찰 직접 보완수사로 추가 금품살포 및 호별 방문 범행을 밝혀내 구속

- 공소시효가 불과 1개월 남은 시점에 불구속 송치된 후, 신속히 통화내역·금융계좌 분석, 관련자 12명 조사, 호별방문 대상 조합원 140명 전화조사 등 검찰 직접수사를 통해 조합원 2명에 대한 금품제공 및 호별방문 등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A를 구속하였음
- 통화내역·데이터기지국위치 분석으로 A 등의 동선을 파악하여 A가 조합원들을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을 토대로 혐의를 규명하였음

2. B 관련, 부인하는 사건을 송치받아 검찰 직접수사를 통해 전직 조합장의 재직 중 권력형 기부행위 범행의 전모를 규명

- 금품제공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에서 불구속 송치받은 후 주거지·택배회사 등을 압수수색하여 선물제공 명단과 회계장부를 확보하고, 조합원 100여명 상대로 전화조사 등 치밀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142명에 대한 274만원 상당 추가 기부행위까지 밝혀내 B를 구속하였음
- B가 甲축협 조합장으로 11년간 재직하면서 조합장의 권력을 이용해 명절선물 명목 예산을 조성하고, 그 일부를 빼돌려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조합원들에게만 선물을 배송한 권력형 금품선거 범죄를 엄단함

Ⅳ

수사의의 및 향후계획

- 검찰은 금품을 살포한 전·현직 조합장의 불구속 송치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여 추가 금품제공 혐의까지 밝혀내 구속기소하고,
 - 출마예정자와 금품살포에 가담한 조합원도 불구속기소하여 지역 사회에 만연한 금품선거 범죄에 경종을 울림
- 안양지청은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조합원들의 표심을 왜곡하는 금품살포 등 선거부정에 엄정하게 대처하고,
 -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철저히 공소유지하여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